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및 지원 근거 마련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20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가.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5
나. 제명 및 구성체계	13
2. 조문별 검토	14
가.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14
나. 안 제2장 디지털기반교육의 조성 및 확산(안 제5조~제8조) ..	25
다. 안 제3장 교원의 역량 개발(안 제9조~제12조)	31
라. 안 제4장 디지털교과서의 운영체계(안 제13조~제19조)	34
마. 안 제5장 학습데이터의 처리(안 제20조~제28조)	47
바. 안 제6장 보칙(안 제29조)	64
사. 안 제7장 벌칙(안 제30조~제31조) 및 부칙	6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2025. 4. 15.
3. 회부연월일: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사교육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교육비 지출은 27조원을 넘어섬. 이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을 추진함.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기반교육은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추진되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등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하고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

우 교원을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1조).

마.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마련·추진과 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및 취소와 디지털교과서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

아. 교육부장관은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21조).

- 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학습 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6조).
- 차.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대하여 각각의 주체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학습데이터를 전송받은 자(본인은 제외)는 전송받은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8조).
- 카. 학습데이터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 기준으로 각각 29.2조원, 80.0%를 기록함.

[표 1]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추이(2020~2024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교육비 총액	193,532	234,158	259,538	271,144	291,919
사교육 참여율	67.1	75.5	78.3	78.5	80.0

자료: 통계청,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각 연도

2024년 기준 사교육비 지출액을 교과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 55.1만원, 예체능 등 24.3만원으로 일반교과에서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고, 일반교과 내에서는 영어 26.4만원, 수학 24.9만원 순으로 지출됨.

[표 2] 사교육 참여학생의 사교육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구분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사교육비 월평균액	16.4	26.4	24.9	14.6	55.1	24.3	59.2

자료: 통계청, 교육부,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5. 3.

사교육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교과의 사교육 수강은 주로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50.5%)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일반교과 사교육의 수강목적

(단위: %)

구분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보육	기타
수강목적 비중	14.4	3.3	23.1	50.5	6.5	2.3

자료: 통계청, 교육부,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5. 3.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대해 성인남녀의 60.7%, 75.3%, 74.0%가 각각 지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소계	보통이다	적다	거의없다	합계
	매우크다	크다					
초등학교	25.2	35.5	60.7	29.9	7.7	1.9	100.0
중학교	29.0	46.3	75.3	16.4	6.6	1.7	100.0
고등학교	52.1	21.9	74.0	12.7	9.2	4.2	100.0

주: 2024년 7월 기준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 대상, 2024. 8. 9. ~ 2024. 8. 29. 조사 결과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4)」, 2024. 12.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각각 8,315명, 0.03명 증가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5]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20~2024년)

(단위: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²⁾
출생아 수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43
합계출산율 ¹⁾	0.84	0.81	0.78	0.72	0.75

주: 1)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2024년도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각 연도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20~2024년) 학생 수도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2024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9.0~12.7명,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15.7~24.5명 수준임.

[표 6]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치원	11.4	10.9	10.3	9.4	9.0
초등학교	14.2	14.0	13.7	13.3	12.7
중학교	11.8	11.9	11.7	11.6	11.6
고등학교	10.1	9.9	9.6	9.8	10.1

주: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 / 교원 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표 7] 학급당 학생 수 추이(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치원	16.7	17.5	16.7	16.1	15.7
초등학교	21.8	21.5	21.1	20.7	20.0
중학교	25.2	25.5	25.0	24.6	24.5
고등학교	23.4	23.1	22.6	22.9	23.4

주: 1.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급 수

2. 학급수 기준은 2020년까지 인가학급이었으나 2021년부터 편성학급으로 변경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이와 같이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저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영어, 수학 등 일반교과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학교수업을 보충함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AI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한 집중 연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을 제시하였음.

또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영어·정보 등 3개 교과 수업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년 6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2024년 4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2024년 5월) 등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문제, 교과용도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24년 12월 법률에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교과용 도서는 도서와 전자책에 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¹⁾ 2025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유보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 청원으로 제출됨.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6630, 교육위원장)은 2024.12.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2025.1.22. 대통령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25.4.17. 재의처리결과 부결됨.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과 관련하여, 2026년 이후 적용 교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2024.10),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11월, 교육부는 국어, 기술·가정(실과) 교과를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 과학 교과는 2026년이 아닌 2027년부터 적용하는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적용 과목과 시기를 변경함.²⁾

2) 교육부,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 2024.11.

[표 8]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로드맵

구분	준비 (2023·2024년)	도입 (2025년)	확산 (2026년 이후)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준비 지원	적용 (초3·4, 중1, 고1)	적용 (‘26년 : 초5·6, 중2, 고2 → ‘27년 : 중3·고3)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데이터 표준 제공 -	적용 (초3·4, 중1, 고1) (고3통·일반선택과목) 수학, 영어, 정보 + 0	적용 (‘26년 : 초5·6, 중2 → ‘27년 : 중3) 과목 추가
교원	T.O.U.C.H. 교원 (‘23년 : 400명 → ‘24년 : 800명) 대상 교원의 40% 관리자 100%(2.4만명)	T.O.U.C.H. 교원 1,500명 대상 교원의 70%	T.O.U.C.H. 교원 2,000명(‘26년) 대상 교원의 100%(‘26년)
디지털 인프라	디바이스 보급·점검 (‘22.3. 기준 151만대) 유·무선망 점검	1인 1 디바이스 초3·4, 중1, 고1 모니터링 및 보완	1인 1 디바이스 초5·6, 중2, 고2(‘26년) → 중3(‘27년) 모니터링 및 보완
현장 파트너십	시범 시·도교육청 (‘23년 : 7개 → ‘24년 : 17개) 선도학교 (‘23년 : 300교 → ‘24년 : 700교)	17개 추가 확대	17개 추가 확대

자료: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2023. 2.

[표 9]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

구분	교과목	기존	변경
초	영어, 수학, 정보	2025년 도입 → 2027년 도입 완료	동일
	사회(역사), 과학	2026년 도입 → 2028년 도입 완료	2027년 도입 → 2028년 도입 완료
	국어, 실과	2026년 도입 → 2028년 도입 완료	적용 제외
중	영어, 수학, 정보	2025년 도입 → 2027년 도입 완료	동일
	사회(한국사)	2027년 도입 → 2028년 도입 완료	2027년 도입 → 2028년 도입 완료
	과학	2026년 도입 → 2028년 도입 완료	적용 제외
고	국어, 기술·가정	2026년 도입 → 2028년 도입 완료	적용 제외
	영어, 수학, 정보	2025년 도입 → 2027년 도입 완료	동일
	사회(한국사), 과학	2028년 도입	동일
특수	국어, 실과	2028년 도입	적용 제외
	국어	2025년 초등 도입	2027년 중·2028년 고까지 확대
	수학	2026년 초등 도입	2027년 중·2028년 고까지 확대
	생활영어	2027년 도입	적용 제외
	정보통신	2028년 도입	적용 제외

자료: 교육부,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 2024. 11.

이와 같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자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담, 학생들의 교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교육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문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과몰입과 문해력 하락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디지털 기기 관리 업무 등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기 등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형 학습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원 역량 개발, 디지털교과서 운영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공교육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운영에 수반되는 학습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위법한 처리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공교육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21대국회에서는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26630호, 김진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음.

나. 제명 및 구성체계

제정안의 제명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으로,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되며, 본칙은 31개 조문이 7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부칙은 1개 조문으로 구성됨.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 본칙(3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디지털기반교육의 조성 및 확산	
제5조(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제7조(디지털 역량 교육)
제6조(조사·연구·분석)	제8조(재정 확보)
제3장 교원의 역량 개발	
제9조(교원 연수)	제11조(과건근무)
제10조(연수를 위한 협력)	제12조(포상 등 지원)
제4장 디지털교과서의 운영체계	
제13조(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제17조(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지원)
제14조(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합격 및 취소)	
제15조(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	제18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의무)
제16조(디지털교과서 등의 저작권)	제19조(지도·감독 및 조치 명령)
제5장 학습데이터의 처리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제25조(관리·운영지침의 수립 및 준수)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제27조(위임규정)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송요구)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제6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과태료)
□ 부칙(1개 조문)	

2. 조문별 검토

가.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1) 목적(안 제1조)

안 제1조는 제정안의 입법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별 조문을 해석·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함.³⁾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밝히고 있음.

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239

2)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학교”, “지능정보기술”,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기반교육”, “학습데이터”,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교과서”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디지털기반교육”이란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수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5. “학습데이터”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학생의 소속·학년·반 등의 학적정보 및 이름 등의 인적정보 나. 학생의 학습교과·학습량·학습시간·학습진도 등 학습과정 및 이수상황에 관한 정보 다. 학생이 수행한 과제·과제수행 내역·과제 평가결과 등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구축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⁴⁾

4)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244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여 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을 초·중등학교로 명시함.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이러한 적용대상에 맞추어 안 제2조제3호는 “디지털교과서”를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육 기재라고 할 수 있음.

제정안은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므로, 해당 조항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적용하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을 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함)」에서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개정안에는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하는 개정안⁵⁾도 있으나,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⁶⁾도 있어 개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서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669호,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95호,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또한 현행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안 제2조제3호는 “디지털교과서”를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과용도서규정」은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있어,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기술”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 규정하여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준용하고 있는데,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참고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한편 안 제2조제4호는 “디지털기반교육”을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수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으로 규정하여 디지털교과서 등을 통한 디지털기반교육의 형태를 규정하고, 안 제2조제5호는 “학습데이터”를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학생의 인적정보, 학습과정 및 이수상황에 관한 정보,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여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안 제2조제6호는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대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구축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여 각 발행사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구축,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제2조(정의)제3호 디지털교과서]

○ 교육부: 일부수정

- 법령 간 상이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과서’ 정의를 「교과용도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3. “디지털교과서”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u>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디지털교과서”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u>학생용의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u> 를 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수정

- 법령 간 정의 개념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용도서규정」과 동일한 ‘교과서’ 정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제2조(정의)제5호 학습데이터]

○ 교육부: 이견없음

- AI나 디지털시스템을 학습시키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통상 “학습용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 학습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학습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정안은 적절함.

○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수정

- ‘학습데이터’는 AI나 디지털 시스템에 학습시키는 데이터(저작물)를 의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생학습활동데이터’, ‘학습활동데이터’, ‘학생활동데이터’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관한 결과정보’로 한정하여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안 제3조)

안 제3조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제정안
제3조(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 ① 디지털기반교육은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기반교육은 지능정보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기반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수자로서의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디지털기반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기반교육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술 및 정보 활용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 교육격차 및 선행학습 발생, 교원의 역할 축소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안 제3조에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을 통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의 설계·추진, 교원에 대한 존중과 지원,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조제3항은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디지털기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나열된 항목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제2조제13호에서 정보격차의 발생 사유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규정하고, 제45조에서 그 해소 시책 등을 규정함.

참고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보격차”란 <u>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u>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u>차이가 생기는 것</u>을 말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⁷⁾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⁸⁾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이므로,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개인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정안에서 규정할 특수성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⁹⁾

7)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258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유사 입법례는 아래와 같음.

「기초학력 보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 교육부: 이견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려는 입법 취지를 표명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배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정안에서 개인정보와 연관 있는 조항들을 모두 배제할 경우 제정안이 규정하는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정보주체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원칙(제3조) 및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권(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교육부: 일부수정

- 「저작권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2항과 동일한 구조로 ‘저작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저작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수정

- 디지털 기반 교육 과정에서 다량의 저작물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저작권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

9)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유사 입법례는 아래와 같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안 제2장 디지털기반교육의 조성 및 확산(안 제5조~제8조)

1)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조)

안 제5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콘텐츠,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5조(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2.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디지털 기반 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의 확보·유지관리 4. 그 밖에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기기가 지급되어야 하고,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갖추어져야 하며, 학습에 필요한 풍부한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서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2024년 5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등을 발표한 바 있음.

동 계획에 따라 2025년 2월 기준으로, 디지털기기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인 초·중등학교 3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6.0%가 보급되었고, 네트워크는 학습공간 기준으로 126.9%가 구축됨.

[표 10] 디지털기기 보급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단위: 명, 대, 실, %)

디지털기기 보급 ¹⁾			네트워크 구축		
대상 학생 수(A)	보급대수(B)	보급률(B/A)	학습 공간 수(C)	구축수(D)	구축률(D/C)
1,737,461	1,841,257	106.0	368,324	467,441	126.9

주: 1)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인 초·중등학교 학생(초3~4, 중1, 고1) 대상으로, 디지털기기(태블릿·노트북)를 보급한 현황

1. 2025년 2월 기준

자료: 교육부

2) 조사·연구·분석(안 제6조) 및 디지털 역량 교육(안 제7조)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사용을 위하여 안 제6조는 조사·연구·분석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디지털 역량 교육을 규정함.

제정안
제6조(조사·연구·분석)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또는 위탁 전문기관·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또는 위탁 전문기관·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디지털 역량 교육)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역량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기반교육은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용자의 역량이 필요함.

이를 위해 안 제6조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

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조 디지털 역량 교육은 안 제6조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주체, 목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교육이 학교 단위에서 시행(안 제7조제3항)될 것임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 디지털 역량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는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내용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법령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u>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u>원격교육</u>”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정 확보(안 제8조)

안 제8조는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제정안
제8조(재정 확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수업 설계 역량 등 교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디지털기반교육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디지털기반교육은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취지에서 안 제8조는 재정 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장 디지털기반교육의 조성 및 확산’에 포함된 안 제8조는 필요한 재정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열거하고 있으나,

같은 장에 포함된 인프라 구축(안 제5조(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외에, 교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안 제3장 교원의 역량 개발’에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기반교육은 제정안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문체계가 맞지 않음.

따라서 제정안의 제2장 디지털기반교육의 조성 및 확산에 제3장 교원의 역량 개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제2장의 마지막 조항으로 제8조 재정 확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안 제3장 교원의 역량 개발(안 제9조~제12조)

1) 교원 연수(안 제9조), 연수를 위한 협력(안 제10조), 파견근무(안 제11조), 포상 등 지원(안 제12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연수, 파견근무, 포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9조(교원 연수)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역량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평등하게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원 연수 여건 격차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수를 위한 협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원 연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 및 교수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을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교수학습 활동 성과가 뛰어난 교원 및 학교에 대하여 포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기반교육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원이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 수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 성과에 대해 적절히 보상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안 제3조제4항에서 교수자로서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안 제3조제4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연수를 제공하고 연수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며, 원활한 연수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교원을 파견근무 하며, 성과가 뛰어난 교원 및 학교에 대해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2023년에 개정된 바 있음.¹⁰⁾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9938호, 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 4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선도교사를 3만 4,000명 양성하고 전체 교사에 대해 맞춤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방안에 따라 2024년에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를 1만 1천여명이 이수하였고, 각 시·도교육청 주관 교육혁신 교사 연수를 17만 6천여명이 이수하였음.

[표 11] 교사 연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4		2025	2026	계획 합계
	계획	실적	계획	계획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	11,500	11,658	11,500	11,000	34,000
교육혁신 교사 연수	152,000	176,304	68,000	82,500	302,500

자료: 교육부

라. 안 제4장 디지털교과서의 운영체제(안 제13조~제19조)

1)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안 제13조), 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합격 및 취소(안 제14조)

안 제13조는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보급 시책을 마련하고 발행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4조는 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13조(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준수하여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14조(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합격 및 취소) ① 디지털교과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또는 디지털교과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인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디지털교과서의 내용, 체제,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를 존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인정 합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¹¹⁾하고 있으나,

11)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역할(안 제13조), 품질 관리(안 제15조), 저작권(안 제16조), 지원(안 제17조), 의무(안 제18조), 학습데이터 처리(안 제24조) 등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검·인정 합격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특히, 디지털교과서는 민간업체인 각 발행사에서 개발·구축, 운영·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이 이루어지므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 제13조와 같이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의 기준이 되는 시책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고 이를 발행사가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유사하게 디지털교과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제정안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위임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교과서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현행 「교과용도서규정」 제38조 검정 합격취소 등 및 제39조 청문에 대한 내용¹²⁾을 제정안의 디지털교과서에 부합하도록 규정한 것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제14조(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합격 및 취소)제2항 저작자에 대한 발행권 설정 변경 명령]

○ 교육부: 이견없음

- 현행 「교과용도서규정」 제38조와 동일한 문구로 그간 적용해 온 바, 제정안의 규정은 적절함.

○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수정

- 「저작권법」 상 유사한 용어(배타적 발행권 설정)와 혼동하여 ‘디지털교과서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자를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입법 취지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함.

12) 「교과용도서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2) 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안 제15조)

안 제15조는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를 규정함.

제정안
제15조(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지원 및 대응 관리 체계 2. 장애관리 체계 3.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등 변경 관리 4.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기반교육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디지털기반교육의 품질관리는 디지털기반교육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 제22조 국가통합 정보시스템 업무의 위탁과 같이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 ③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품질 관리 지침에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조치’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개정안	수정안
제15조(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지원 및 대응 관리 체계 2. 장애관리 체계 <신설> 3.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등 변경 관리 4.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지원 및 대응 관리 체계 2. 장애관리 체계 3.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관리 체계 4.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등 변경 관리 5.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품질관리 지침에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조치’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검·인정 요건(제14조 관련)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교과서 등의 저작권(안 제16조)

안 제16조는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16조(디지털교과서 등의 저작권)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다.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지적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실제 학생이 사용한 저작물에 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다.

디지털교과서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은 제16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현행 교과용 도서도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여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행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이 적용됨.

제정안과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안 제16조제1항은 「저작권법」 제25조제1항과 공통적으로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반면, 「저작권법」은 게재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으나, 제정안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의미

하고,¹³⁾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및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로 포함되므로, 제정안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안 제16조제2항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교과용도서로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제정안은 그 주체를 ‘디지털교과서 발행자’로,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디지털교과서 발행자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구축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의미하고, 「저작권법」에서 발행은 저작물 등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차이가 있음.

안 제16조제3항은 「저작권법」 제25조제6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저작물에 한정하는 예외를 규정하는 반면, 「저작권법」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고, 학교에서 복제등을¹⁴⁾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

13)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4)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외를 규정하는 차이가 있음.

아울러 제정안은 제16조제4항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정할 때 저작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안 제16조는 제정안과 「저작권법」에서 ‘발행’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보상금 지급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저작권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에서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경우 보상금 지급 관련 기준 등이 이원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2] 저작권 관련 제정안과 현행 「저작권법」 비교

구분	제정안	현행 저작권법
	제16조(디지털교과서 등의 저작권)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 게재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u>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u> 공표된 저작물을 <u>디지털 교과서에 게재</u> 할 수 있다.	① <u>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u> 필요한 <u>교과용도서</u> 에는 <u>공표된 저작물을 게재</u> 할 수 있다.
저작물 복제· 배포· 공중 송신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u>디지털교과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u>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다.	② <u>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u>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구분	제정안	현행 저작권법
보상금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는 교육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실제 학생이 사용한 저작물에 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협의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한다.	
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구축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 를 말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 발행 ”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기관 및 학교교육에 적합한 보상금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저작권법」 제25조와 중복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16조 삭제 의견을 제시함.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 내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25조를 통해 규율되고 있어 별도 중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
--

4)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지원(안 제17조)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의무(안 제18조)

제정안은 제17조에서 발행사 등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제18조에서 학기 중 또는 학년 중에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함.

제정안
제17조(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지원)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공교육 활성화 기여 수준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의무) 제14조에 따라 검·인정에 합격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민법」상 해산, 파산, 청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중 또는 학년 중에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기반교육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기재이므로,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안 제17조에서 발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해당 조항은 발행사 등의 공교육 활성화 기여 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원이 발행사 등에 대한 공교육 참여 활성화 유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한 공교육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그 효과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안 제18조는 제14조에 따라 검·인정에 합격한 발행사에 대하여 「민법」상 해산, 파산, 청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중 또는 학년 중에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함.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고,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되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됨.¹⁵⁾

안 제18조는 이와 같은 재산상의 사유 등으로 발행사가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디지털교과서로 진행되는 수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사가 사전에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8조는 조치계획 마련에 대한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5)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5) 지도·감독 및 조치 명령(안 제19조)

안 제19조는 교육부장관이 발행사 등에 대하여 보고·서류제출 명령, 지도·감독, 검사·질문,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19조(지도·감독 및 조치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실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하거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실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장, 사무실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려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사항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인정 합격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류 제출 명령·지도·감독,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3항에 따른 증표 제시,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구축, 운영·관리하고(안 제2조제6호),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시책·지침 등을 준수하여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며(안 제13조제2항),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안 제15조제2항),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안 제25조제2항)해야 함.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사용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 수립(안 제6조제2항), 디지털교과서의 품질 관리(안 제15조제3항),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안 제22조제3항)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9조제2항)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발행사, 위탁 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는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발행사, 위탁 기관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시책·지침 등의 준수 여부, 위탁 기관 등의 업무 수행 실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발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명령, 지도·감독, 검사·질문 등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지 명령을 하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검·인정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마. 안 제5장 학습데이터의 처리(안 제20조~제28조)

- 1) 학습데이터의 처리(안 제20조), 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안 제21조),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안 제22조), 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안 제23조),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안 제24조), 관리·운영지침의 수립 및 준수(안 제25조), 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26조), 위임규정(안 제27조)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학습데이터의 처리에 대해 규정함.

제정안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운영·관리 정보시스템(이하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개발·운영할 때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안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및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디지털교과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운영 2. 개별 디지털교과서 학습상황 등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3. 디지털교과서 변경 등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이력정보 연계 지원 4.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 등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데이터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되, 가명처리는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분석
2.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맞춤형 학습 지원정책 마련
3.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정책 마련
4.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수행
5.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기획·집행 및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는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균등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등 비식별 처리 등 가공하여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제23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범위·방식으로만 수집·분석·활용 등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과 무관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제1항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운영지침의 수립 및 준수)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의 분리, 보안인증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학습데이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에 보관된 학습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7조(위임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데이터의 수집·이용·처리·보유 범위·보유 또는 파기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수집되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축 근거와 시스템을 통한 학습데이터의 처리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제정안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학습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27조에서 그 외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각 조문의 내용이 보다 유기적으로 구성되도록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3]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조문별 주요 내용

구분	조제목	주요 내용
학습 데이터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 학습데이터 처리 원칙
시스템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 교육부장관의 국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센터 설치·운영 또는 업무 위탁 근거
학습 데이터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 교육부장관이 국가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목적, 한계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 발행사가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으로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 한계, 점검 결과 제출
	제25조(관리·운영지침의 수립 및 준수)	· 시스템의 학습데이터 보호를 위한 관리·운영지침 수립 및 준수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 / 위조·변경·훼손 /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공통	제27조(위임규정)	·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내용 대통령령 위임

구체적으로 안 제20조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학습데이터를 학습데이터를 제정안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제정안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음.

한편 안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안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

30조(벌칙)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가 가해짐.

이와 같이 안 제20조와 안 제26조제3호는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26조제3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지므로, 안 제20조의 내용을 안 제26조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의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시스템을 규정한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는 제20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와 제21조(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시스템 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표 14]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정안과 수정안 비교

제정안		수정안		비고
학습 데이터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	*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내용 반영	흡수 삭제
시스템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시스템	제20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중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내용과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통합	분리 재조합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제21조(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중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 내용	분리
학습 데이터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학습 데이터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유지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제25조(관리·운영지침의 수립 및 준수)		제25조(관리·운영지침의 수립 및 준수)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내용 반영	통합 개정
공통	제27조(위임규정)	공통	제27조(위임규정)	유지

다음으로, 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중 시스템의 구축·운영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한 부분에 따르면,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은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안 제21조제1항)하고,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은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안 제21조제2항), 수집·분석·활용 등 처리(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그 외에 교육부장관의 학습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처리(안 제23조제1항), 학습데이터 제3자 제공(안 제23조제3항),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제3자 제공(안 제24조제1항)을 이행하는 방식 등은 규정되지 않음.

학습데이터는 학생의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처리, 제공하는 등의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5] 국가통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목적 및 기능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u>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u> 할 수 있도록 <u>국가학습데이터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u>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u> 할 수 있는 <u>디지털교과서 운영·관리 정보시스템(이하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 등 처리</u> 할 수 있다.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제23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범위·방식으로만 <u>수집·분석·활용 등 처리 또는 제3자에게</u>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
	<u>제공</u>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과 무관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는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u>수집·관리</u> 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를 <u>제3자에게 제공</u>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제1항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u>처리</u>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교과서 운영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제3항은 발행사가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개발·운영할 때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안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25조는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자가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행사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안조치 등과 안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학습데이터 관리·운영지침은 모두 학습데이터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임.

다만 준수해야 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행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도 안 제25조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같은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에 따른 안전 조치의무를 디지털기반교육에 부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위임에 따른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2025년 5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정심사 기준과 개발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¹⁶⁾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 2025.5.15.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상세내용 생략)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2.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분석·점검·관리 등의 조치

다음으로, 안 제22조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학교생활기록, 건강검사기록 등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사유 등을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u>교육정보시스템</u>(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u>구축·운영</u>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u>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u>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u>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u>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 안 제23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데이터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되, 가명처리는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데이터에 학생의 인적정보, 학습정보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u>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은 발행사가 학습데이터를 디지털기
 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범위·방식으로만 수집·분석·활용 등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디지털기반교육과 무관한 자체 사업에 활
 용해서는 안 되며,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호 실태의 정기점검 결과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습데이터에는 공교육을 통해 수집된 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행사에 대한 학습
 데이터의 사용 범위 제한 및 점검 결과 제출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
 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 교육부: 이견없음
 - 제정안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포함)’에 근거하여 학습데이
 터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학습데이터 정의에 따른 경우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로
 서의 추가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 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u>근 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 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u>근 거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 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u>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제3항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준수 사항]

○ **교육부: 이견없음**

- 해당 조항은 발행사에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실질적 조치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발행사에 대한 명시적 의무 부과의 차원에서 규정할 실익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은 별도 규정할 필요가 낮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수정안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③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개발·운영할 때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안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③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개발·운영할 때 안전성 확보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제3항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 설치·운영]

○ **교육부: 이견없음**

- 제정안에서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제정안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

○ **행정안전: 신중검토**

-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 **교육부: 일부수정**

-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 하는 것이 ‘활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활용’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학습데이터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함.
- 법 문언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의 ‘가명정보’와 혼동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에 따라 ‘익명·가명처리 등 비식별 처리 등 가공하여’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으로 수정함.

개정안	수정안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 활용 등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데이터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명 또는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 이용 등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데이터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명 또는

개정안	수정안
가명처리하되, 가명처리는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각 호 생략)	가명처리하되, 가명처리는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u>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처리 상황에 맞도록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학습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u> (각 호 생략)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단서 신설></u>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처리 상황에 맞도록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학습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u>
2. 균등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등 비식별 처리 등 가공하여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균등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제23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범위·방식으로만 수집·분석· 활용 등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과 무관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u><후단 신설></u>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제23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범위·방식으로만 수집·분석· 이용·제공 등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과 무관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처리 상황에 맞도록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학습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u>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처리’는 ‘수집’, ‘이용’, ‘제공’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므로 용어 사용상 혼란 방지를 위해 ‘활용’을 ‘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필요시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7조(위임규정)]

○ 교육부: 일부수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2호*)」 상 ‘처리’가 ‘수집, 이용, 생성, 제공, 파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므로 ‘사용’을 ‘처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함.

개정안	수정안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처리 금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처리 하는 행위
제27조(위임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데이터의 수집·이용·처리·보유 범위·보유 또는 파기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데이터의 수집·이용·보유·파기 등 처리 범위·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처리’가 ‘수집’, ‘이용’, ‘생성’, ‘제공’, ‘파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용’을 ‘처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송요구(안 제28조)

안 제28조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학습데이터의 전송요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송요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대하여 각각의 주체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해당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전송받은 자(본인은 제외한다)는 전송받은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전송 대상 학습데이터의 범위, 요구·전송의 방식과 절차 및 제3자 제공 금지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8조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습데이터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당 학생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데이터를 전송받은 사람이 전송받은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습데이터의 임의적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8조제1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습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육부장관, 교육감,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각각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해당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 교육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음.¹⁷⁾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u>보건의료 관련</u>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2. <u>통신 관련</u>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3. <u>에너지 관련</u>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 제42조의2제3호는 2026. 6. 1.부터 시행

17)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 개정, 2025.3.13.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2.25. 개정, 2025.3.13. 시행 * 일부 조항은 시행일이 별도로 규정됨)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의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인의 학습데이터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중검토**

-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므로 별도 입법 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 분야별 법제가 별도로 마련될 경우 데이터 연계·이용을 위한 표준화, API 등이 상이하여 데이터 연계 경직화 및 플랫폼 연계에 따른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분야별 추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바. 안 제6장 보칙(안 제29조)

1)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9조)

안 제29조는 교육부장관의 권한 등에 대한 위임·위탁을 규정함.

제정안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9조는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⁸⁾

18) 권한의 위임·위탁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는 아래와 같음.

「기초학력 보장법」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원격교육법」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 안 제7장 벌칙(안 제30조~제31조) 및 부칙

1) 벌칙(안 제30조), 과태료(안 제31조)

안 제30조 및 제31조는 정당한 접근 권한 등이 없이 학습데이터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함.

제정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에 보관된 학습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자 2. 제2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3. 제26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조치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마련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자 5.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학습데이터’에는 학생의 인적정보, 학습과정 및 이수상황에 관한 정보,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의 보호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

제정안은 제30조(벌칙)와 제31조(과태료)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안 제30조는 정당한 접근 권한 등이 없이 학습데이터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제1호),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제3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해당 벌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제71조제10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제71조제2호)과 유사함.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훼손,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제64조의2제1호 및 제9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제정안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u>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u>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u>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u>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3. <u>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u>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u>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u>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과징금</u>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u>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u>.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31조는 조치계획 미이행, 보고·서류제출 미이행, 지도·감독 및 출입·검사 등 방해, 조치명령 미이행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

한편, 안 제31조의 내용 중 보고·서류제출 미이행(제2호), 출입·검사 등 방해(제4호), 조치명령 미이행(제5호)과 유사한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제4조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는 제정안이 우선 적용됨.¹⁹⁾

따라서 안 제31조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한(3천만원) 보다 낮은 수준의 상한(1천만원)으로 제재가 적용되는데, 학습데이터의 민감성, 개인정보 관련 조치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제30조(벌칙)]

○ 교육부: 이견없음

- 제정안 제30조제1호, 제3호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0호, 제2호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2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체될 수 있는 조항이 명확치 않다고 판단됨.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하고 있는 양벌의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같고, 현 제정안이 제26조 각 호에 대한 벌칙규정을 특별히 정하여 제2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제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안에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중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은 형사제재 이외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부칙

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은 시행이 긴급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관 설립 및 인력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²⁰⁾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은 2025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정안은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 수립, 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지침 마련, 학습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학습데이터 관리·운영지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

20)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821